

(24) 2014회계 지방세 지출보고서(2014년도)

I. 지방세 비과세·감면 현황 개요

1. 비과세·감면 총괄표

(단위: 원, %)

| 구 분 | | '14년(결산) |
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
| 비과세·감면액(A) | | 309,101,447,150 |
| | 비과세 | 57,465,348,040 |
| | 감 면 | 251,636,099,110 |
| 지방세 징수액(B) | | 1,358,343,894,480 |
| 비과세·감면율(A/A+B) | | 18.5 |

2. 기능별 비과세·감면 현황

(단위: 원, %)

| 분 야 | | '14년(결산) | 비 중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총 계 | | 309,101,447,150 | 100 |
| 1 | 일반공공행정 | 34,566,586,770 | 11.18 |
| 2 | 공공질서 및 안전 | 65,239,450 | 0.02 |
| 3 | 교육 | 8,363,975,640 | 2.71 |
| 4 | 문화 및 관광 | 3,758,327,650 | 1.22 |
| 5 | 환경보호 | 320,520,750 | 0.1 |
| 6 | 사회복지 | 25,838,551,250 | 8.36 |
| 7 | 보건 | 2,541,796,190 | 0.82 |
| 8 | 농림해양수산 | 29,140,092,830 | 9.43 |
| 9 | 산업·중소기업 | 68,029,268,400 | 22.01 |
| 10 | 수송 및 교통 | 8,791,972,840 | 2.84 |
| 11 | 국토 및 지역개발 | 102,968,271,060 | 33.31 |
| 12 | 국가 | 7,997,080,710 | 2.59 |
| 13 | 기타 | 16,719,763,610 | 5.41 |

3. 세목별 비과세·감면 현황

(단위: 원, %)

| 분 야 | | '14년(결산) | 비 중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총 계 | | 309,101,447,150 | 100 |
| | 보 통 세 | 303,298,080,020 | 98.1 |
| | 취 득 세 | 292,982,247,720 | 94.8 |
| | 등록면허세 | 6,817,882,900 | 2.2 |
| | 구)취득세 | 1,321,781,780 | 0.4 |
| | 등 록 세 | 2,176,167,620 | 0.7 |
| | 목 적 세 | 5,803,367,130 | 1.9 |
| | 지역자원시설세 | 5,803,367,130 | 1.9 |

4. 비과세·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

(단위: 원)

| 감 면 유 형 | '13년(결산) | '14년(결산) | 증 감 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| 24,635,847,450 | 33,324,906,420 | 8,689,058,970 |
|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| 17,417,321,420 | 23,420,403,210 | 6,003,081,790 |
|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| 114,969,323,670 | 83,270,249,930 | -31,699,073,740 |
|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| 13,676,104,270 | 14,053,126,150 | 377,021,880 |
|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| 12,565,755,700 | 12,996,218,860 | 430,463,160 |
|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| 15,383,515,690 | 10,727,598,990 | -4,655,916,700 |
|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| 9,995,745,930 | 10,489,890,200 | 494,144,270 |
|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| 9,415,051,730 | 9,402,723,710 | -12,328,020 |
|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| 5,753,722,280 | 5,623,994,330 | -129,727,950 |
|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| 5,234,411,370 | 4,717,220,940 | -517,190,430 |
| 종교, 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| 3,809,052,580 | 3,737,848,870 | -71,203,710 |
| 한국농촌공사의 농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| 4,284,171,220 | 3,718,098,260 | -566,072,960 |
|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 | 87,836,976,880 | 3,404,051,650 | -84,432,925,230 |
|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| 3,763,210,680 | 3,399,294,680 | -363,916,000 |
|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| 4,662,371,580 | 2,929,904,360 | -1,732,467,220 |
|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| 2,314,725,010 | 2,371,357,550 | 56,632,540 |
|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| 3,279,127,580 | 1,571,619,300 | -1,707,508,280 |
|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| 2,372,187,190 | 1,565,976,420 | -806,210,770 |

II. 지방세 비과세·감면 항목별 세부내역

1. 일반공공행정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일반공공행정 | | 합 계 | 34,566,586,770 |
| 1 |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- 취득·등록면허·주민세·재산·자동차·지방소득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1호,, §90, §109① 1호, §145① 1호, §145②) - 지방자치단체가 국방, 경호 및 소방, 환자수송, 청소,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 12호) | 소 계 | 23,420,403,210 |
| | | 취 득 세 | 21,189,866,630 |
| | | 구)취득세 | 77,685,570 |
| | | 등 록 세 | 107,023,070 |
| | | 등록면허세 | 235,490,77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1,810,337,170 |
| 2 | 지방자치단체 등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-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②) | 소 계 | 10,489,890,200 |
| | | 취 득 세 | 10,489,890,200 |
| 3 |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·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-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·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·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②, §145②) | 소 계 | 14,626,33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14,626,330 |
| | | - | - |
| 4 |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-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45① 2호)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| 5 | 정당에 대한 비과세 - 정당에 대해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89①, §89②, §89③) | 소 계 | 16,500 |
| | | 등록면허세 | 16,500 |
| | | - | - |
| 6 | 정당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- 정당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(지방세특례제한법 §89④)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| 7 |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-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세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§90①, §90②) | 소 계 | 520,579,300 |
| | | 취 득 세 | 432,795,100 |
| | | 구)취득세 | 3,315,860 |
| | | 등 록 세 | 6,834,630 |
| | | 등록면허세 | 883,50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76,750,210 |
| 8 | 사유 도로·하천·제방·구거·유지·묘지에 대한 비과세 -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3호) - 도로·하천·제방·구거·유지·묘지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③ 1호, §145② 지방세특례제한법 §55①) | 소 계 | 164,070 |
| | | 등 록 세 | 164,070 |
| | | - | - |
| 9 |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- 지방공사·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6, §85의2①②) | 소 계 | 120,907,160 |
| | | 취 득 세 | 105,812,590 |
| | | 등록면허세 | 15,094,570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, 재단 법인에 대한 취득·재산·등록면허세 감면(50%)(지방세특례제한법 §85의2③) -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 감면(50%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85의2④) | - | - |

2. 공공질서 및 안전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공공질서 및 안전 | | 합 계 | 65,239,450 |
| |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 | 소 계 | 0 |
| 1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갱생보호공단 등의 갱생보호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5①) | - | - |
| |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면 | 소 계 | 0 |
| 1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영교도소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감면(50%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85②) | - | - |
| |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| 소 계 | 65,239,400 |
| 12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천재·지변·소실·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·선박·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레저·주민세·재산·자동차·지방소득·담배소비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4④, §92① 1호, §92②, §92③) | 취 득 세 | 64,273,320 |
| | | 등 록 세 | 174,240 |
| | | 등 록면허세 | 777,19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14,650 |
| | | - | - |
| | 재해구조 및 재해구호를 위한 과세특례 | 소 계 | 50 |
| 13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상재해구조용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45②) - (경기 파주) 전국재해구호협회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| 지역자원시설세 | 50 |
| | | - | - |

3. 교육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교 육 | | 합 계 | 8,363,975,640 |
| |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| 소 계 | 1,610,976,220 |
| 14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세·재산·지방소득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1호, §90, §109① 1호, §145① 1호, §145②) | 취 득 세 | 1,359,152,950 |
| | | 등 록면허세 | 1,394,22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250,429,050 |
| | | - | - |
| 15 | 교육자치단체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| 소 계 | 0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| - 교육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 비과세(지방세법 §9②) | - | - |
| 16 |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·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-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 109②, § 145②) | 소 계 | 37,30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37,300 |
| | | - | - |
| 17 | 교육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- 교육자치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 145① 2호)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| 18 |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-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주민세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 41①, § 41②, § 41③, § 41⑤) - 산업체부설 중·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용 부동산,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·실습용 차량·기계장비·항공기·입목·선박에 대하여 취득·주민세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19, § 42①, § 42②, § 42⑤) -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42⑥) | 소 계 | 6,639,707,000 |
| | | 취 득 세 | 5,493,211,560 |
| | | 등 록 세 | 20,992,560 |
| | | 등록면허세 | 4,696,00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1,120,806,880 |
| | | - | - |
| 19 |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-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 제공 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 41④)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| 20 |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-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주민세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(지방세특례제한법 § 43①, § 43②, § 43③, § 44) | 소 계 | 35,376,880 |
| | | 취 득 세 | 3,722,480 |
| | | 등록면허세 | 93,00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31,561,400 |
| | | - | - |
| 21 | 평생교육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- 평생교육단체에게 생산된 전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 43④) | 소 계 | 21,64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21,640 |
| | | - | - |
| 22 |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-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 45①) -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용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 45②) | 소 계 | 77,856,600 |
| | | 취 득 세 | 43,237,69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34,618,910 |
| | | - | - |

4. 문화 및 관광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문화 및 관광 | | 합 계 | 3,758,327,650 |
| 23 | 종교·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- 종교·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주민세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 50①, § 50②, § 50③, § 50⑤, § 50⑥) -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38④) | 소 계 | 3,737,848,870 |
| | | 취 득 세 | 3,047,134,450 |
| | | 구)취득세 | 4,509,380 |
| | | 등 록 세 | 42,650,030 |
| | | 등록면허세 | 1,178,50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642,376,510 |
| | | - | - |
| 24 | 종교·제사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- 종교·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 50④)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| 25 | 신문·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- 신문·통신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51)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| 26 | 문화·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- 도서관에 관한 등기·등록 취득·등록면허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 52②) - 정부 인·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 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52①) - 도서관·박물관·미술관용 부동산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44) - (서울 종로구) 인사동·대학로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 감면 - (서울) 공연장에 대한 취득·등록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 - (경기, 양주) 양주 장흥 문화·예술체험특구 내 문화예술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, 재산세 감면 | 소 계 | 20,478,780 |
| | | 취 득 세 | 7,840,00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12,638,780 |
| | | - | - |
| 27 | 관광단지 등에 대한 감면 -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54①) -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용 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호텔업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54②) - 호텔업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세 중과 배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54③) - 보양온천용 부동산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54④)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| | | - | - |
| | | - | - |
| 28 |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| 소 계 | 0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 인·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진흥 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·재산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2①) - (부산) 부산광역시경륜공단이 경륜장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 중 장외발매소분 세액의 20% 경감 - (제주) 제주경마공원에서 발매한 장외발매소분에 대한 레저세액 경감 | - | - |
| |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| 소 계 | 0 |
| 29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3) - 사적지에 대하여 재산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55② 12호) - 국보,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 면제(조례) - (서울 종로)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에 대한 재산세 저율과세 | - | - |

5. 환경보호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환경보호 | | 합 계 | 320,520,750 |
| | 환경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| 소 계 | 0 |
| 3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재활용시설, 기술개발지원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① 1:2호) | - | - |
| |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 | 소 계 | 1,579,840 |
| 3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53) -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25% 감면((지방세특례제한법 §48) | 취득세 | 1,579,840 |
| | | - | - |
| |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| 소 계 | 0 |
| 32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양오염방제 업무용 부동산에 취득·재산세 75%, 교육훈련등 시설용 부동산에 취득세 75% 및 재산세 25%감면,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한 취득세 75% 재산세 25%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9 1:23호) | - | - |
| |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| 소 계 | 318,940,910 |
| 33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녹색건축물인증 등급,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건축물 취득·재산세 5~1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② 1호,2호, §47⑥) -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에너지절감율 등에 따라 취득세 5~1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③) | 취득세 | 318,940,910 |
| | | - | - |

| | | |
|--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업무용 건축물 취득세 5~1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④) -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92의3①) | | |
|--|--|--|

6. 사회복지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사회복지 | | 합 계 | 25,838,551,250 |
| | | 소 계 | 0 |
| 34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(균등분) 비과세(지방세법 §77②) | - | - |
| | | 소 계 | 4,079,561,470 |
| 35 | 장애인에 대한 감면 - 장애등급 1~3급(시각장애 1~3급)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·자동차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7①) - 시각장애(4급)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·자동차세 면제(조례) | 취 득 세 | 4,079,561,470 |
| | | - | - |
| 36 |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감면 -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8)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| 37 |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-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하는 주택, 축사용 부동산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7의2) | 소 계 | 98,41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98,410 |
| | | - | - |
| 38 | 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 -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복지증진사업용 및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4①) -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4②) -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4③) | 소 계 | 91,352,720 |
| | | 취 득 세 | 91,352,720 |
| | | - | - |
| 39 |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- 사회복지법인, 양로원·보육원·모자원·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,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주민세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①, §22②, §22③, §22⑤) - 사회적기업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의4) | 소 계 | 399,185,740 |
| | | 취 득 세 | 311,538,740 |
| | | 등록면허세 | 4,800,34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82,846,660 |
| | | - | - |
| 40 | 사회복지법인·시설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- 사회복지법인 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④)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41 |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-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주민주민세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19) -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22의2①, § 22의2②) | 소 계 | 4,717,220,940 |
| | | 취 득 세 | 4,562,989,090 |
| | | 등 록 세 | 355,79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153,876,060 |
| | | - | - |
| 42 |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-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20 1호) -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취득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20 1-2호) | 소 계 | 483,681,670 |
| | | 취 득 세 | 476,324,44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7,357,230 |
| | | - | - |
| 43 |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- 스카우트 주관단체, 한국청소년연맹, 한국해양소년단연맹, 정부 인·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21①) -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취득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21②) - 휴면예금 관리재단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22의3) | 소 계 | 194,356,270 |
| | | 취 득 세 | 192,794,97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1,561,300 |
| | | - | - |
| 44 |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- 대한적십자사·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·재산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23 1-3호) - 법률구조공단 및 「법률구조법」인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23 2호) | 소 계 | 15,249,100 |
| | | 취 득 세 | 15,249,100 |
| | | - | - |
| 45 |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-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% 및 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27①) - 산재의료관리원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주민주민세 면제 및 재산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27②)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| 46 |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- 노동조합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법 § 26)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| 47 |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감면 - 군인·경찰·지방행정·교직원공제회가 회원용 소형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25①) -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28①) | 소 계 | 3,239,480 |
| | | 등록면허세 | 3,239,480 |
| | | - | -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| -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25②) | | |
| 48 |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| 소 계 | 821,920,400 |
| | -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, 부동산 취득·등록면허·주민세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9②, §29③) | 취 득 세 | 813,618,510 |
| |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9①) | 등록면허세 | 4,359,840 |
| | -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2,000cc 이하 승용차 등에 대하여 취득·자동차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7①) | 지역자원시설세 | 3,942,050 |
| | -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·입원중인 상이군경 등에게 공급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면제 (지방세법 §54① 7호) | - | - |
| 49 |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| 소 계 | 186,109,380 |
| | -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30①) | 취 득 세 | 186,109,380 |
| | - 보훈병원에 대한 주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30②) | - | - |
| | - 독립기념관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주민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30③) -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8② 2호) | - | - |
| 50 |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| 소 계 | 3,404,051,650 |
| | -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0의2) | 취 득 세 | 2,602,612,730 |
| | - 40㎡이하·취득가액 1억원미만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33②) | 구)취득세 | 400,989,960 |
| | | 등 록 세 | 400,448,960 |
| | | - | - |
| 51 |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| 소 계 | 10,727,598,990 |
| | - 한국토지주택공사의 60㎡이하 매입 임대용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④) | 취 득 세 | 10,189,486,950 |
| | -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①·③)) | 지역자원시설세 | 538,112,040 |
| | -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2①) -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4②) -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환매기간내 재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34③) -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감면 | - | -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| (지방세특례제한법 §34④) - 대한주택공사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시 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4⑤) -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_2년이상임대 취득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의2①, §31의2②) -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②) -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【재산세액-(담보대출금액*60/100*1/1000)】 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의3) -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와 「지방세법」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의3) | | |
| |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| 소 계 | 132,754,740 |
| | - 대상주택의 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①) | 등록면허세 | 132,754,740 |
| 52 | -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(25%)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③) | - | - |
| | -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(6억원이하 100%)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의2) | - | - |
| |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을 위한 감면 | 소 계 | 582,170,290 |
| | -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36) | 취 득 세 | 582,170,290 |
| 53 | - 생애최초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(§36의2①) | - | - |
| | - (제주) 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㎡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 | - | - |

7. 보건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| 보건 | 합 계 | 2,541,796,190 |
| |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| 소 계 | 0 |
| 54 | - 서울대학교병원, 서울대학교치과병원, 국립대학교병원, 국립암센터, 의과대학부속병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| - | - |

| | | | |
|----|--|-------|---------------|
| | 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, 주민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 37, § 41①) - 지방의료원의 의료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재산·지역자원시설·주민·지방소득세 면제(조례) | | |
| 55 |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-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38①) -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 38②) -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,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 26② 4호) -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(종료)·재산세·주민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38③) -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38④) | 소 계 | 2,371,357,550 |
| | | 취득세 | 2,371,299,050 |
| | | 등록면허세 | 58,500 |
| | | - | - |
| 56 |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-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39①) -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업무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39②) | 소 계 | 125,587,440 |
| | | 취득세 | 125,587,440 |
| | | - | - |
| 57 |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감면 - 인구보건복지협회·한국건강관리협회·대한결핵협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40) | 소 계 | 44,851,200 |
| | | 취득세 | 44,851,200 |
| | | - | - |

8. 농림해양수산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농림해양수산 | | 합 계 | 29,140,092,830 |
| 58 |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- 농업인의 농자·임야,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% 감면, 도로·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 6) -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,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7) -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·분할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8②) - 농업·축산업에 대한 주민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10②) -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(조특법 § 106의2① 1호) - (부산·대구·인천·경기·경남)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및 | 소 계 | 12,996,218,860 |
| | | 취득세 | 12,833,739,270 |
| | | 구)취득세 | 52,224,050 |
| | | 등록세 | 73,084,540 |
| | | 등록면허세 | 37,171,000 |
| | | - | - |
| | | - | -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| <p>녹지지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 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75%→50%→25%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광주 광산) 평동산업단지예정지구내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- (대전 유성) 대전과학산업단지내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- (경남 양산) 구 웅상읍 내 농지 재산세 50% 감면('09년), 25% 감면('10년) - (경남 진주) 초전·장재공업지역 내 자경농지 재산세 분리과세 - (충남 보령) 보령명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자경농지 재산세 과세이연 - (경기 광주)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경농지에 대한 농지 재산세 25% 감면 | | |
| 59 | <p>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①) -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④) - (경기 광주시)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재산세 25% 감면 | 소 계 | 4,211,280 |
| | | 취득세 | 4,211,280 |
| | | - | - |
| 60 | <p>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업인·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에게 농지관리기금 등을 융자할 경우 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① 1호) -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또는 영농규모확대사업에 따라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① 2호) -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,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·시설물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1호) -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2호) - 영농규모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3호) - 제3자 공급목적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4호) -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5호)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③) | 소 계 | 3,718,098,260 |
| | | 취득세 | 3,507,561,670 |
| | | 구)취득세 | 48,900 |
| | | 등록세 | 2,469,260 |
| | | 등록면허세 | 208,018,430 |
| | | - | - |
| 61 | <p>농업법인에 대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농조합법인 등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영농유통·가공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50% 감면,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1) -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지방 소득세 면제(소득법 §66③) | 소 계 | 4,290,747,750 |
| | | 취득세 | 3,882,471,830 |
| | | 구)취득세 | 29,737,080 |
| | | 등록세 | 20,229,400 |
| | | 등록면허세 | 358,309,440 |
| - | - | | |
| 62 | <p>임업인에 대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업인이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·분합하는 임야 취득세 | 소 계 | 46,129,400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 (단위: 원) | |
|----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| 면제, 99만㎡이하 보전산지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③) - 임업에 대한 주민(종업원·재산)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0②) - 임업인이 임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자동차세 면제(조특법 §106의2①1) | 취 득 세 | 46,129,400 |
| | | - | - |
| 63 |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- 산림유전자원보호림·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③ 2호)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| 64 |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감면 -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부동산 취득·재산·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4⑤) -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차량 취득세 면제(조례) - 직접시설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및 재산세 면제(조례) - 지원시설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50% 감면(조례) | 소 계 | 1,26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1,260 |
| | | - | - |
| 65 |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-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9①) -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9②) - 출원에 따른 어업권 취득세 면제, 어업권에 관한 등록 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9③) - 수산업에 대한 주민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0②) - 어업인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자동차세 면제(조특법 §106의2① 1호) | 소 계 | 150,207,320 |
| | | 취 득 세 | 68,067,460 |
| | | 등록면허세 | 77,082,50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5,057,360 |
| | | - | - |
| 66 |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- 영어조합법인의 영어유통·가공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2①) -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지방소득세 면제(조특법 §67③) | 소 계 | 36,615,070 |
| | | 취 득 세 | 16,088,830 |
| | | 구)취득세 | 14,661,600 |
| | | 등 록 세 | 5,864,640 |
| | | - | - |
| 67 |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·영농조합법인 등에 융자시 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감면(75%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0①1~5) | 소 계 | 3,399,294,680 |
| | | 등록면허세 | 3,399,294,680 |
| | | - | - |
| 68 |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4①)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업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의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세 50% 감면,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4②) | 소 계 | 3,494,488,190 |
| | | 취 득 세 | 3,434,094,610 |
| | | 등 록 세 | 32,878,820 |
| | | 등록면허세 | 27,514,760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 (단위: 원) | |
|----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업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% 감면, 업무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14③·④)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의 조합간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, 양수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57① 1호) | - | - |
| 69 |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15①) - 농수산물공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감면(100%) 및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감면(100%)(지방세특례제한법 § 15②)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| 70 | 농수산물가공사업에 대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, 농산물 산지가공산업자, 수산물 가공업자가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(조례) | 소 계 | 25,429,320 |
| | | 취 득 세 | 25,429,320 |
| | | - | - |
| 71 |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어촌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이고, 6개월 이상 비워 둔 주택 재산세 면제(삭제2010.1.1) -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·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00㎡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16) | 소 계 | 978,651,440 |
| | | 취 득 세 | 978,651,440 |
| | | - | - |

9. 산업·중소기업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 (단위: 원) |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산업·중소기업 | | 합 계 | 68,029,268,400 |
| 72 |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56①·②) - 지역신용보증재단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면제, 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 등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56③)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| 73 |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,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(조특법 § 119②, § 120③, § 121) -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재산세 대도 | 소 계 | 9,402,723,710 |
| | | 취 득 세 | 9,356,813,610 |
| | | 등록면허세 | 45,910,100 |
| | | - | -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| 시 중과 배제,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0③ 1·2호) | | |
| 74 |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-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제품생산용 부동산 등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유통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9①, §60①) -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회원 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60②) -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감면(50%),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감면(50%)(지방세특례제한법 §60④) - (전북) 생물산업진흥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등록면허·재산·지역자원시설·주민·지방소득세 면제 | 소 계 | 96,450 |
| | | 등록면허세 | 96,450 |
| | | - | - |
| | | - | - |
| 75 |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- 중소기업자에게 분양·임대 목적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9②) - 협동화실천계획의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협동화사업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9③) | 소 계 | 620,117,360 |
| | | 취 득 세 | 620,117,360 |
| | | - | - |
| 76 |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- 정부로부터 인·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술진흥단체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5①) -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, 주민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42③·④) | 소 계 | 14,743,530 |
| | | 취 득 세 | 14,743,530 |
| | | - | - |
| 77 | 연구·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-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6①) - 시험분석·연구용 담배, 신제품 개발시험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(지방세법 §54① 6·7호) - (광주, 북구·광산구) 한국광기술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 | 소 계 | 350,144,340 |
| | | 취 득 세 | 126,903,900 |
| | | 등 록 세 | 223,240,440 |
| | | - | - |
| 78 |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- 한국산업안전공단, 한국산업안전교육용 등 부동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근로자 평생학습지원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8②) - 행자·지경부 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법인합병에 대한 법인등기 및 양수재산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7①4) | 소 계 | 13,244,290 |
| | | 취 득 세 | 563,590 |
| | | 등록면허세 | 12,680,700 |
| | | - | - |
| 79 |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| 소 계 | 0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·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 목적 재산 취득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①) - 벤처기업집적시설·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·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②·③) -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④) -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 등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의2) - (인천·광주·강원·전남) 테크노파크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 - (광주) 광주디자인센터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등록면허·재산세 면제 - (서울·경기) 도시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등록면허세 50% 감면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 - (제주) 토평공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5년 안에 지상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면제 - (강원·경북·문경)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7년간 재산세 100%, 3년간 재산세 50% 감면 - (대구·경북) 우수향토기업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등록면허·재산세 50% 감면 - (서울·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·경기·평택·강원·충북·전북·경북·경남) 고용창출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50% 감면 | - | - |
| 80 |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,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를 5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(조특법 §121의2) (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) | 소 계 | 1,801,889,140 |
| | | 취 득 세 | 1,801,889,140 |
| | | - | - |
| 81 | 담배 수출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출용, 보세구역판매용 담배 등에 대해 담배소비세 면제(지방세법 §54① 13호)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| 82 | 법인·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·공장에 대해 법인등기 및 사업용 부동산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100%, 3년간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79·§80, 조례) | 소 계 | 298,625,550 |
| | | 취 득 세 | 297,219,150 |
| | | 등록면허세 | 1,406,400 |
| | | - | - |
| 83 |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장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3) -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면제(조례) - (서울 자치구)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% 감면 | 소 계 | 73,226,460 |
| | | 취 득 세 | 73,226,460 |
| | | - | -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84 | 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- 도시가스사업용 가스관, 열공급사업용 열수송관에 대해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1) -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법인에 대해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대도시 종과 배제 및 50% 감면(조특법 §119⑤, '10.1.1.폐지) - (인천·경기·충남·전북·전남·제주) 한국전력공사의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- (강원·충북·경북)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면제 및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50% 감면 | 소 계 | 1,184,340,040 |
| | | 취득세 | 1,184,340,040 |
| | | - | - |
| | | - | - |
| 85 | 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- 광업권의 설정·변경 등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62①) - 출원에 따라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 지상임목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2②) -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석채기능공훈련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해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2③) - 광산근로자용 사택 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(조례) | 소 계 | 423,000 |
| | | 등록면허세 | 423,000 |
| | | - | - |
| | | - | - |
| 86 |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- 자동차·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·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 3호),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8①) - 수출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 3호) - 무역업자의 수출용 중고자동차·기계 등에 대해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8②) | 소 계 | 14,053,126,150 |
| | | 취득세 | 14,053,112,950 |
| | | 등록세 | 13,200 |
| | | - | - |
| 87 |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-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간의 합병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7① 4호) -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(조특법 §119⑫·6·12·15·16·17·19·23·24·25·26·27·29, §120⑫·5·11·15·16·19·20·21·22·23·25, §120⑬·2·4·9·10·12·13), 50% 감면(조특법 §119⑬·28, §120⑬·12·24) | 소 계 | 2,929,904,360 |
| | | 취득세 | 589,770,390 |
| | | 등록세 | 238,146,610 |
| | | 등록면허세 | 2,101,987,360 |
| - | - | - | - |
| 88 |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-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업부채상환용 토지 재산세 50% 감면(삭제) -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(조특법 §119⑬·3·7·10·11, §120⑫·2·6·9·10, §120⑬·7·8) -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산립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, | 소 계 | 33,324,906,420 |
| | | 취득세 | 33,321,348,700 |
| | | 구)취득세 | 891,280 |
| | | 등록세 | 445,640 |
| | | 등록면허세 | 2,220,800 |
| | | - | -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|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7②) -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·농협금융지주회사·농협은행·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 보험으로 분리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7③) -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, 사업의 양·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(조특법 §119④, §120⑤) | | |
| 89 | 명목회사에 대한 감면 - 부동산투자회사·부동산집합투자기구·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등록면허세 50% 감면(조특법 §119③, §120④) - 투자회사 등의 설립등기 및 설립후 5년이내 자본 출자·증자 등 기시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 배제(조특법 §119③) - (부산·제주) 선박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70% 감면 | 소 계 | 3,961,757,600 |
| | | 취 득 세 | 3,844,710,890 |
| | | 구)취득세 | 28,745,580 |
| | | 등 록 세 | 88,301,130 |
| | | - | - |

10. 수송 및 교통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수송 및 교통 | | 합 계 | 8,791,972,840 |
| 90 |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-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·주안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①) - 한국철도공사의 역사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·주안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②) - 철도사업목적 지방공사 재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재산세 감면(100%)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④) | 소 계 | 17,587,960 |
| | | 취 득 세 | 17,587,960 |
| | | - | - |
| 91 | 무료도선용 선박 등에 대한 비과세 - 무료도선용·선교구성용·전마용 선박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③ 4호, §145②)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| 92 | 해운·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- 국제선박 취득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4①) - 화물운송용·외항여객운송용·원양어업용 선박에 대해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4②) - 컨테이너부두공단의 항만시설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, 사업지구 안의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(삭제) -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시행령 §137①) -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자동차세 면제(조특법 §106의2① 2호) | 소 계 | 29,300,000 |
| | | 취 득 세 | 29,300,000 |
| | | - | -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주도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국제선박 등에 대하여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조특법 § 121의15) - (부산·경남, 부산 00구) 부산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세 면제,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50% 감면 - (인천, 인천 00구) 인천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·재산세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 - (울산, 울산 00구) 울산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세 면제, 재산세·지역자원시설세 50% 감면 - (전남, 광양) 광양시 컨테이너항 배후지안에 입주자의 항만 관련시설용 부동산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 | | |
| 93 |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| 소 계 | 21,589,620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등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65) - (인천, 중구)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취득·등록면허세 50% 감면, 재산세 50% 감면 | 취 득 세 | 21,589,620 |
| | | - | - |
| 94 |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| 소 계 | 5,623,994,330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형 승용승합화물차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67) | 취 득 세 | 5,623,961,410 |
| | | 구)취득세 | 22,720 |
| | | 등 록 세 | 10,200 |
| | | - | - |
| 95 |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| 소 계 | 2,012,772,150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면제(취득세액 140만원 한도) 및 공제(140만원초과 시 140만원공제)(지방세특례제한법 § 66③) - 전기자동차 취득세 면제(취득세액 140만원 한도) 및 공제(140만원초과 시 140만원공제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 66④) - 알뜰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와 석규제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의무구매비율(50%)을 충족하는 경우 석유제품판매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감면(50%)(지방세특례제한법 § 62의2) | 취 득 세 | 2,012,772,150 |
| | | - | - |
| 96 |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·등록세 감면 | 소 계 | 0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후자동차를 폐차·양도하고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, 취득세 70% 감면(삭제2010. 12. 27) | - | - |
| 97 | 7~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| 소 계 | 0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, 기타 7~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16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67③) - (서울·부산·대구)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5% 감면 | - | - |
| 98 |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| 소 계 | 5,390,650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69) - 주차장용 부동산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주민·지방소득세 | 취 득 세 | 5,390,650 |
| | | - | -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| 50% 감면(삭제) | | |
| 99 |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| 소 계 | 989,390,440 |
| | - 운수연수원에 대한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면제(삭제) | 취 득 세 | 966,923,050 |
| | -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세(50%) 및 등록면허세 감면(75%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70①) | 등록면허세 | 22,467,390 |
| | -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 취득세 감면(50%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70②) -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자가 천연가스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0③) | - | - |
| 100 |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| 소 계 | 91,947,690 |
| | - 물류단지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71①②) | 취 득 세 | 91,947,690 |
| | - 복합물류터미널사업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71③) | - | - |
| | - (대구, 대구 00구)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내 입주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50% 감면 - (충북,충남,경북) 중부권·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지구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| - | - |

11. 국토 및 지역개발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국토 및 지역개발 | | 합 계 | 102,968,271,060 |
| 101 |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| 소 계 | 1,571,619,300 |
| | - 공익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·수용·철거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73①) | 취 득 세 | 1,560,887,070 |
| | | 등 록 세 | 10,732,230 |
| | | - | - |
| 102 |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| 소 계 | 3,720,922,700 |
| | - 부동산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74①) | 취 득 세 | 3,720,922,700 |
| | -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자·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74①) | - | - |
| 103 |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| 소 계 | 215,705,600 |
| | -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,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자·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74①) | 취 득 세 | 215,705,600 |
| | - 주택재개발사업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및 85㎡이하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| - | -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| <p>채비자·보류지 취득세 비과세 및 대지조성용 부동산·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4①③)</p> <p>-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85㎡이하 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4③)</p> | | |
| 104 | <p>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</p> <p>-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차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(75%),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6①②)</p> <p>- (대구 달성군, 인천 계양구·남동구·서구, 경기 평택시·여주군·동두천시) 토지구획정리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</p> | 소 계 | 4,788,508,270 |
| | | 취 득 세 | 4,788,508,270 |
| | | - | - |
| 105 | <p>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</p> <p>- 한국수자원공사의 분양 목적 단지조성용 토지 취득세 감면(75%),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7)</p>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| 106 | <p>산업단지에 대한 감면</p> <p>-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신·증축시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(수도권은 재산세 50% 감면)</p> <p>-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면제,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면제(수도권은 재산세 50% 감면)</p> <p>-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·조성 후 분양·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재산세 면제(수도권은 재산세 50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①②③④)</p> <p>- 산업단지 내 개축·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(조례)</p> <p>- 농공단지 내 휴·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조례)</p> <p>- (부산, 해운대)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내 최초 입주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, 3년간 50% 감면</p> <p>- (광주 광산구)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, 3년간 50% 감면</p> <p>- (대전 유성·대덕구) 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</p> <p>- (강원, 동해시) 북평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 신·증축시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, 3년간 50% 감면</p> | 소 계 | 83,270,249,930 |
| | | 취 득 세 | 82,072,128,400 |
| | | 구)취득세 | 297,543,860 |
| | | 등 록 세 | 900,577,670 |
| | | - | - |
| 107 | <p>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</p> | 소 계 | 1,270,895,910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, 3년간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1①②) -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62.5~10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1③) | 취 득 세 | 1,270,694,910 |
| | | 등록면허세 | 201,000 |
| 108 |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도시 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15년간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, 3년간 50% 감면(조특법 § 121의 17, 조례) | 소 계 | 1,087,750,470 |
| | | 취 득 세 | 1,087,750,470 |
| | | - | - |
| 109 |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75) - 제주투자진흥지구·제주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의 사업용 재산 등 취득세 면제, 재산세 3년간 면제, 2년간 50% 감면(조특법 § 121의9③) -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민세 면제, 사업용 부동산 취득·등록면허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조특법 § 121의16) - (서울)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·등록면허세 면제 - (부산) 한국거래소의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·등록면허세 면제 - (부산)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50% 감면 - (제주) 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4% 적용, 재산세는 일반 주택 세율 적용 - (제주)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4% 적용, 재산세 3년간 25% 감면 - (제주) 골프장용 토지·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4% 적용, 골프장용 건축물·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저율과세 - (제주)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·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세 50% 감면 - (제주) 건축공사 착공 후 부도·자금사정 등에 따라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를 매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·등록면허세 | 소 계 | 57,667,120 |
| | | 취 득 세 | 57,667,120 |
| | | - | - |
| 110 |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약지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100㎡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82)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| 111 |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| 소 계 | 0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84①) -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84②) -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84③) | - | - |
| 112 | 건설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인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대도시 안에 설립하는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중과 배제(삭제)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| 113 |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32②) -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60㎡이하 5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33①) | 소 계 | 6,984,951,760 |
| | | 취득세 | 6,984,951,760 |
| | | - | - |
| 114 |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에 대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34①)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| 115 |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34②) -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한 주거용 부동산을 환매기간 내 재매입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34③) -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, 재산세 0.1% 과세(삭제) -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 매입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%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34⑤) -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3년간 재산세 우대세율 0.13%(조례) - 하수급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수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이전등기 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(조례) -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시 취득세 75% 감면(조례)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
12. 국가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국 가 | | 합 계 | 7,997,080,710 |
| 116 | 국가에 대한 비과세 - 국가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주민·재산·지방소득세·지역자원시설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1호, §90, §109①, §145① 1호) - 국가가 국방·경호·경비·교통순찰 및 소방, 환자수송·청소·오물수거와 도로공사, 우편·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) | 소 계 | 6,408,864,970 |
| | | 취 득 세 | 5,438,817,820 |
| | | 구)취득세 | 273,630 |
| | | 등 록 세 | 1,351,280 |
| | | 등록면허세 | 30,538,06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937,884,180 |
| 117 |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-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②) | 소 계 | 1,565,976,420 |
| | | 취 득 세 | 1,565,976,420 |
| | | - | - |
| 118 |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·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-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① 2호, §109②, §145②) | 소 계 | 22,239,32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22,239,320 |
| | | - | - |
| 119 | 국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- 국가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45①2)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| 120 | 국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- 「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(조특법 §119① 1호, §120① 1호)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| 121 | 국군 등에 납품하는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- 국군·전투경찰·교정시설경비교도에 납품하는 담배 및 국가원수의 행사용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면제(지방세법 §54① 2호, §54① 7호)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
13. 기타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기 타 | | 합 계 | 16,719,763,610 |
| 122 |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- 임시 흥행장,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⑤, §109③ 3호, §109③ 5호, §145①) -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③ 5호) | 소 계 | 54,431,710 |
| | | 취 득 세 | 251,94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54,179,770 |
| | | - | - |
| 123 | 신탁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 -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③ 1호) | 소 계 | 5,378,014,250 |
| | | 취 득 세 | 5,378,014,250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9억원이하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 ⑥, §15② 1호) -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 대한 대도시 종과배제(지방세법 §9 2·3·5·6·7호) | - | - |
| 124 |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, 「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등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 ④, §15① 1호, 지방세특례제한법 §73③) | 소 계 | 1,199,790 |
| | | 취 득 세 | 1,199,790 |
| | | - | - |
| 125 |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5① 2호) | 소 계 | 1,471,599,580 |
| | | 취 득 세 | 1,356,253,440 |
| | | 구)취득세 | 115,346,140 |
| | | - | - |
| 126 |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5① 3,4호) -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·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1호) - 정부가 5할 이상 출자하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의 개정·폐지로 인하여 조직변경됨에 따른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(조특법 §119① 2호, §120① 3호) | 소 계 | 9,242,998,630 |
| | | 취 득 세 | 8,947,212,460 |
| | | 구)취득세 | 295,786,170 |
| | | - | - |
| 127 |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전한 건축물의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5 ① 5호) | 소 계 | 1,539,480 |
| | | 취 득 세 | 1,539,480 |
| | | - | - |
| 128 |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5① 6호) - 행정구역 변경, 주민등록번호 변경,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·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·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5② 4호) -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③) -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66②) -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2·4호) -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시행령 §40② 3호) - 매년 1월 1일 「부가가치세법」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시행령 §40② 4호) | 소 계 | 412,644,510 |
| | | 취 득 세 | 340,512,420 |
| | | 등 록 세 | 179,210 |
| | | 등록면허세 | 71,952,880 |
| | | - | -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시행령 §40② 5호) -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 126 3호) -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6①) | | |
| 129 | 해외근로자 등 지원을 위한 비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외교협회의 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 취득·등록면허세 비과세 (지방세특례제한법 § 91) -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·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·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 판매하는 담배,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·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직원·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,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 등이 반입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면제(지방세법 §54①4·5·7호, §54②)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| 130 | 시설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레저시설, 저장시설,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, 도관시설, 급배수시설, 에너지 공급시설 등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 (지방세법 시행령 § 137①)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| 131 |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별정우체국에 대한 취득·주인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 72①·②·③2) -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직원 복리증진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면제, 자산운용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72③ 1호) | 소 계 | 5,420,830 |
| | | 취 득 세 | 3,520,91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1,899,920 |
| 132 |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협·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금고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, 주민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87① 1호, § 87② 1호) - 신협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87① 2호, § 87② 2호) - 새마을금고간 또는 신협간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, 양수 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57① 2·3호) | 소 계 | 110,933,790 |
| | | 취 득 세 | 97,145,090 |
| | | 등록면허세 | 13,788,700 |
| | | - | - |
| 133 |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·재산세면제, 주민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88①) -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88② 1호) -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88② 2호) - (경남)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한 감면(추가) | 소 계 | 38,906,250 |
| | | 취 득 세 | 38,906,250 |
| | | - | -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14년(결산) |
| 134 | 저축지원을 위한 감면 -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면제(조특법 § 89①) -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면제(조특법 § 89의3①②)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| 135 |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- (서울 00구)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의 호위를 위하여 경호안정상 별도주거지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 - (서울 00구)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 1,000분의 1.5 적용 | 소 계 | 0 |
| | | - | - |
| 136 |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-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92의2) | 소 계 | 2,074,790 |
| | | 등록면허세 | 1,982,10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92,690 |
| | | - | - |